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증 권 거 래 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였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영(零)에서 1만분의 5로, 코스닥시장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 ~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중 “영(零)”을 “1만분의 5”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탄력세율) ----- ----- -----.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 한다.	1. ----- ----- ----- ----- 1만분의 5 <단서 삭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5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20

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4